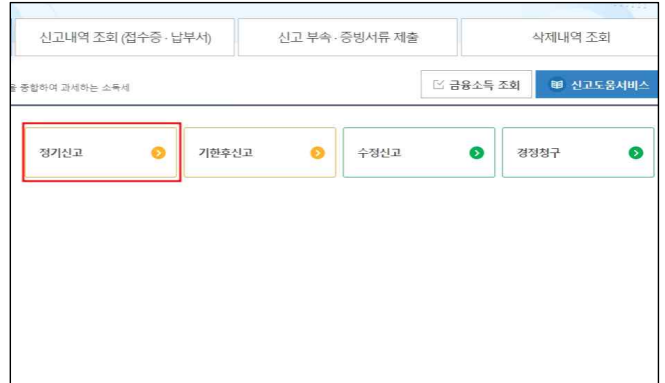


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수정 안내

○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

1) 모두채움으로 신고하는 경우: 신고화면 이동 ▶ 정기신고



2) 일반신고로 신고하는 경우: 일반신고 선택 ▶ 정기신고



○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'저장 후 다음이동' ▶ 다시 작성하기 '확인'

(기존 신고된 내역이 없는 경우 신규로 작성)



○ 기존 신고서 불러오기 '확인'

teht.hometax.go.kr에 삽입된 페이지 내용:
 기존 제출하신 신고서를 불러오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.
 (새로 작성하려면 [취소]를 눌러주세요.)

확인 취소

종합소득세 신고

과내역 조회 (접수증·납부서) 신고 부속·증빙서류 제출

○ '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' 선택 후 '선택자료 수정'

세액의 계산

근로/연금/기타(종교인) 소득 명세서
 * 연말정산간소화, 지급명세서(근로, 연금 등)를 불러오기 하려면 추가인증(간편인증, 공동인증 등)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근로/연금/기타(종교인) 소득 불러오기 추가입력 **선택자료 수정** 선택자료 삭제

소속구분	소득의 지급자		총수입금액 (총급여액· 총연금액)	필요경비 (근로소득공제· 연금소득공제)	소득금액
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상호(성명)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60	221-82-10213	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		
<input type="checkbox"/>	60				

○ 총수입금액, 필요경비, 원천징수 소득세 금액 수정

소득의 지급자정보 입력

※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<소속구분> 코드는 58,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<소속구분> 코드는 67입니다.

소속구분	기타소득 60			
소득의지급자 (소득을 지급한 자)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221-82-10213 조회	상호(성명)	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
총수입금액 (총연금액)	<input type="text"/>		필요경비 (연금소득공제)	<input type="text"/>
소득금액 :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	<input type="text"/>			
원천징수 소득세	<input type="text"/>		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	<input type="text"/> 0

등록하기 닫기

- 총수입금액: 원천징수영수증 12번 합계액
- 필 요 경 비 : 원천징수영수증 14번 합계액
- 소 득 세 : 원천징수영수증 17번 합계액

○ 위택스 신고금액은 홈택스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산출되므로,
금액 확인 후 신고

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tax reporting. The top section is titled '환급계좌' (Refund Account) and contains two input fields: '환급은행' (Refund Bank) and '환급계좌' (Refund Account). Below this is the '동의 여부' (Consent) section. It contains a paragraph of text explaining the reporting process. At the bottom right of this section, there is a checkbox labeled '이제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' (I agree and submit the return) and a blue button labeled '신고' (Report).

※ 기존에 신고를 완료하여 환급신청 또는 추가세액을 납부하신 경우
위 절차대로 소득금액을 수정하여 기존의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이 변동되므로,
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환급신청을 하신 경우

- 소득세: 기신고된 종합소득 금액을 수정하면 환급세액도 자동 수정 및 반영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변경된 최종 환급세액으로 환급 예정
- 지방소득세: 관할 시·군·구청에 연락하여 변경된 금액으로 환급 요청

2. 세액을 납부 하신 경우

- 1) 소득금액 수정 후 기존에 납부한 세액보다 변경된 최종 세액이 더 커지는 경우
 - 소득세: 안내되는 계좌번호로 추가 금액만 납부
 - 지방소득세: 관할 시·군·구청에 연락하여 계좌번호로 추가금액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 후 납부
- 2) 소득금액 수정 후 기존에 납부한 세액보다 변경된 최종 세액이 더 작아지는 경우
 - 소득세 →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차액 환급
 - 지방소득세 →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연락하여 차액 환급 신청